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64
----------	------

제출년월일 : 2012. 12.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2012 상반기 규제 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일부 기준을 정비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임.

2. 주요내용

- 가. 공중화장실 용어 정의에 간이화장실 추가(안 제2조)
- 나. 적용 범위와 관련한 인용법 개정 내용 반영(안 제3조제2항)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 제52조제1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 제54조제1항
- 다.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는 불필요한 설치 기준 삭제
(제5조제5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기준 삭제
- 라. 공중화장실에 갖춰 놓고 제공해야 하는 편의용품 추가
(안 제8조제5호)
⇒ 여성 위생용품(또는 여성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 마.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기준을 실정에 맞게 조정(안 제9조)
⇒ 1일 3회 이상 청소 ⇒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 등

바. 관리 대장 비치 규정 삭제(제10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와 관련한 별지서식과 같음

사. 개방화장실 설치·관리자가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2조제3항)

아. 이동화장실 설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삭제(제14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명시된 규정

자. 간이화장실 설치·관리 기준 신설(안 제15조의2)

차. 유료화장실 운영자 준수 사항 폐지(제17조)

⇒ 제8조와 제9조에서 공통(공중화장실 등)으로 명시

카.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20조 별표 1)

⇒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자

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합의 :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12.10.31~11.20)결과 : 의견 접수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여

(3) 부패영향평가 : 여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을 “공중화장실 등”이란”으로, “제 2에 의한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유료화장실”을 “제2 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 유료화 장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호의 규정”을 “호”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사항 외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 제7호 · 제10호에 따른 관광지 · 관광단지와 지원시설 중 시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과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 · 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 중 “편의용품의 비치와”를 “편의용품을 갖춰 놓고”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시설의 설치 기준 및 유지 · 관리”를 “시설의 설치 기준과 유지 · 관리”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를 “제6조제3항과 제6조의2 별표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외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내벽”을 “안쪽 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필요 시”를 “필요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에어 타올(페이퍼 타올) · 그림 · 사진 · 화분”을 “손 말리개(종이 수건) · 그림 · 사진 · 화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필요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시행하기 어려우면 화장실 관련 전문 단체와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비치하여”를 “갖춰 놓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비치가 곤란한 경우”를 “갖춰 놓기가 곤란할 때”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성 위생용품(또는 여성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을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부·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와 배수구 등이 요석 등으로 부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훼손된 시설은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다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옥외”를 “건물 밖”으로, “상시”를 “항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상시”를 “항상”으로,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를 “이나 운영자의 근무시간에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을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러 사람”으로, “화장실에 대하여”를 “화장실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을 “인정되면 건축물의 소유자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에는 시민의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제4조에 따른 책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편의 위생용품의 지원)”을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 위생용품”을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이동화장실 설치·관리”를 “이동화장실과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판”을 “표지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필요한 죄”를 “필요한 조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춰 놓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 중 “등을 종료한 때에는 자체 없이”를 “등이 종료되면 바로”로, “원상 복구 하여야”를 “원래대로 복구하여야”로 한다.

제4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의 해충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실 내부를 소독하여야 한다.
6. 간이화장실이 파손되었거나 기능 보강이 필요하면 바로 복구·보강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기준에”를 “법 제7조와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징수하는 경우”를 “징수할 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실 관리와 운영 계획서

제16조제1항제3호 중 “내역서”를 “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면”으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를 “변경하려면 적용일 부터”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교부하여야”를 “내주어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9조 중 “의한 권한의”를 “따른 권한”으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기준에”를 “기준을”로 한다.

제2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2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 나. 과태료 처분 대상자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다. 위반 행위 회수는 해당 위반 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할 때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자	법 제21조 제1항	50	10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가. 법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나. 법제10조에 따른 이동화장실	법 제21조 제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3. 유료화장실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와 유료화장실 설치 · 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가. 법제11조제2항의 표지 부착 의무 위반 나. 법제11조제4항의 설치·관리 기준 위반	법 제21조 제2항제2호	10 20	20 3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법제7조와 법 제7조의2의 설치기준 위반 나. 법제8조의 관리 기준 위반	법 제21조 제2항제3호	20 20	40 40	60 60
5. 법제19조의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제2항제4호	10	20	30
6. 법제14조의 공중화장실 등에서 금지 행위를 한 사람	법 제21조 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

유료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처리기간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3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설현황	소재지			관리주체			
	관리인	(전화번호 :)		설치년도			
규모	부지 : m ² , 화장실 면적 : m ²						
시설내역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내역	편의시설	세면기	손말리개 (종이수건)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1회 사용료	원						
<p>「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p>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충주시장 귀하							
갖출 서류						수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와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 명세서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

대 표 자	상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시 설 내 역	시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편의시설	세면시설	종이 수건 (손 말리개)			환 풍 기	
1회 사용료	원	대	대	대	대	대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충 주 시 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진홍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u></p> <p>제4조(설치 ·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u>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2장 시설의 설치 기준 및 유지 · 관리</u></p> <p>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바닥과 <u>내벽</u>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u>필요 시</u> 화장실에 청소 도구함, 관리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p><u>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u></p> <p>제4조(설치 · 관리자의 책무) --- ----- ----- ----- ----- ----- <u>편의용품을 갖춰 놓고</u> ----- -----.</p> <p><u>제2장 시설의 설치 기준과 유지 · 관리</u></p> <p>제5조(설치기준) ----- ----- ----- <u>제6조제3항과 제6조의2 별표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외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안쪽 벽</u>----- ----- -----. 3. <u>필요하면</u> ----- -----. 4. ----- -----

현 행	개 정 안
<p><u>에어 타올(페이퍼 타올) · 그림 · 사진 ·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u></p>	<p><u>손 말리개(종이 수건) · 그림 · 사진 · 화분 ----- -----.</u></p>
<p><u>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u><삭 제></u></p>
<p><u>제6조(위탁 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u>제6조(위탁 관리 등) ① ----- ----- ----- 필요하면 ----- ----- ----- ----- -----.</u></p>
<p><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 · 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 · 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u></p>
<p><u>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하여야 한다.</u></p>	<p><u>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 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u>실시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 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시행하기 어려우면 화장실 관련 전문 단체와 연계하여 시행 할 수 있다.</p>
<p>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u>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u>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u>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u></p>	<p>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u>공중화장실 등</u> <u>갖춰 놓고</u> -----. <u>갖춰 놓기가 곤란할 때</u>-----.</p>
<p>1. ~ 4. (생 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5. 여성 위생용품(또는 여성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p>
<p>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u>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u></p>	<p>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u>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u> -----.</p>
<p>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p> <p>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내부·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2. 대·소변기와 배수구 등이 요석 등으로 부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훼손</u> <u>· 훼손 · 도색이 필요한 시설은</u> <u>즉시 정비하고, 연 1회 이상</u> <u>도색을 하여야 한다.</u></p> <p><u>제10조(관리 대장의 비치) 공중</u> <u>화장실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u> <u>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u> <u>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u> <u>유지 · 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u> <u>등을 기록하여야 한다.</u></p> <p><u>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u> <u>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u> <u>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u> <u>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u> <u>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u> <u>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u> <u>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u> <u>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u> <u>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u> <u>개방할 수 있다.</u></p> <p><u>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u> <u>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u> <u>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u> <u>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u> <u>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u> <u>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u></p>	<p><u>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훼손된</u> <u>시설은 정비하여야 한다.</u></p> <p><u><삭 제></u></p> <p><u>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u> <u>----- 여러 사람 -----</u> <u>----- ----- ----- -----.</u></p> <p><u>② 제1항에 따라 -----</u> <u>----- 건물 밖 -----</u> <u>--- 항상 -----</u> <u>--- 항상 -----</u> <u>----- ----- ----- -----.</u></p> <p><u>이나 운영자의 근무시간에만 -----.</u></p> <p><u>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u> <u>-----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u> <u>중 여러 사람 -----</u> <u>----- ----- 화장실을 -----.</u></p> <p><u>----- 인정되면 건축물의</u> <u>소유자나 -----.</u></p>

현 행	개 정 안
<p>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p> <p><신 설></p>	<p>-----</p> <p>-----.</p> <p>② 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에는 시민의 눈에 쉽게 띠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붙여야 한다.</p> <p>③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제4조에 따른 책무에 충실히 않으면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13조(편의 위생용품의 지원)</p> <p>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p>	<p>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p> <p>-----</p> <p>-----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p>
<p>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4장 이동화장실과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p> <p><삭 제></p>
<p>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p> <p>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p>	<p>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p> <p>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p>

현 행	개 정 안
<p>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u>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2. · 3. (생 략)</p> <p>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u>지판</u>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이동화장실의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청소, 환기 등 <u>필요한 조치</u>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p>3. (생 략)</p> <p>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u>원상 복구</u>하여야 한다.</p> <p><신 설></p>	<p>----- -----.</p> <p>1. ----- ----- <u>고려하여</u> ----- ----- -----.</p> <p>2. · 3. (현행과 같음)</p> <p>4. ----- ----- ----- <u>표지판</u>----- -----.</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필요한 조치</u>----- ----- -----.</p> <p>3. (현행과 같음)</p> <p>4. <u>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춰 놓고 제공하여야 한다.</u></p> <p>③ ----- --- <u>등이 종료되면 바로</u> ----- ----- <u>원래대로</u> ----- <u>복구하여야</u> -----.</p> <p><u>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u></p>

현 행	개 정 안
	<p><u>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u> <u>· 관리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u> <u>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u> <u>하는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u> <u>2.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u> <u>하고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u> <u>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u> <u>3.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환기</u> <u>시설 등을 설치하고 안내</u> <u>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u> <u>4.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u> <u>취하여 청결이 유지되도록</u> <u>하여야 한다.</u> <u>5. 악취의 발산과 파리 · 모기</u> <u>등의 해충 발생 · 번식을 방지</u> <u>하기 위하여 화장실 내부를</u> <u>소독하여야 한다.</u> <u>6. 간이화장실이 파손되었거나</u> <u>기능 보강이 필요하면 바로</u> <u>복구 · 보강하여 이용객의</u> <u>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u> <p>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 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u>별지</u> <u>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u>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p> <p>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 법 제7조와 제5조에 따른 설치 기준에 ----- <u>별지</u> <u>제1호서식</u>----- ----- <u>붙여</u></p>

현 행	개 정 안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u>징수하는 경우</u> 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 ----- <u>징수할 때</u>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u>	2. <u>화장실 관리와 운영 계획서</u>
3. 화장실 사용료 산출 <u>내역서</u>	3. ----- <u>명세서</u>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라</u> ----- --- <u>변경하려면</u> ----- ----- <u>날부터</u> ----- ----- <u>변경하려면</u> <u>적용일 부터</u> ----- <u>별지 제1호서식</u> ----- ----- <u>붙여</u> ----- -----.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u>교부하여야 한다.</u>	③ ----- ----- ----- <u>별지 제2호서식</u> ----- ----- <u>내주어야</u> -----.
<u>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	<u><삭 제></u>
1. <u>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 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u>	
2. <u>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u>	

현 행	개 정 안
<p><u>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u></p> <p><u>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u></p> <p><u>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u></p>	
<p>제18조(운영자문위원회의 수당) 법 제15조에 <u>의하여</u> 운영자문 위원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u>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u>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8조(운영자문위원회의 수당) ----- <u>따라</u> ----- ----- ----- <u>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u> ----- ----- -----.</p>
<p>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u>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p>	<p>제19조(권한의 위임) ----- ----- <u>따른 권한</u> ----- -----.</p>
<p>제20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u>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의 부과 기준에</u> 따라야 한다.</p>	<p>제20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 -- 법 제21조에 <u>따른</u> ----- ----- <u>기준을</u> -----.</p>
<p>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1조(시행규칙) ----- <u>시행에</u> ----- -----.</p>

관 계 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 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시설
8.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사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 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이동화장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

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간이화장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

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공공용시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라. 장사시설 :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②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 표] <개정 2010. 5. 4>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 센티미터 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 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 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양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 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바닥 면에서 20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 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60센티

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게시설
 -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비고

1. 시·군 또는 구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쪽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제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9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2.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편의용품 비치·제공(안 제8조)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안 제9조)
- 개방화장실 표지 부착(안 제12조)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5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이어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울 때)에 해당된다.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에 따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비용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으며, 편의용품 또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의 규모와 이용자수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하다.

4. 작성자

환경수자원본부 환경정책과장 김 용 철